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70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12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인제 의원 (찬성자 29명)
나. 제안일 : 2025년 8월 11일
다. 회부일 : 2025년 8월 14일
라. 상정일 :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25년 9월 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인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재산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에 금융 피해 관련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절차 등 법적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항제9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5. 8. 20. ~ 8. 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'본 개정안')은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 등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음(안 제6조제1항제9호 신설 등).
- 본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에 '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'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(청소년단기쉼터 등)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시장이 지원(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)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</u></p> <p>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「지방자치법」(제13조제2항제2호라목)은 ‘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’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,
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제16조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(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)의 수립·시행과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(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)를 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.
 - 또한 같은 법(제16조제4항, 제40조)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 - 본 개정안(안 제6조제1항제9호 신설 등)은 법령과 조례의 목적(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)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.

※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※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※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0조(예산의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¹⁾(청소년복지시설) 운영 지침(여성가족부, 「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」)에서도 단기청소년쉼터²⁾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서비스 내용으로 법적 지원(법적 옹호, 법률연계, 법률행정지원 등)을 명시하고 있음.

〈 단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〉

○ 세부내용		
서비스 요소	서비스내용	세부사항 (예시)
보 호	의식주	숙식, 의복 제공, 샤워, 이·미용, 휴식 등
	의료지원	건강검진(발달상태, 성병 등), 응급치료, 질병치료, 임신테스트 등
	법적지원	법적 옹호, 법률연계, 법률행정지원 등
	문화여가활동	다양한 문화체험, 취미생활지원, 봉사활동 캠프 등
	생활지도	초기적응 프로그램*, 자치회의, 일상생활 훈련, 갈등조정 등
	정서지원	개별상담, 집단상담 등
가정복귀 지원**	가족상담	가정방문, 부모교육 및 상담, 가족과의 전화연결 등
	가족지원	가족서비스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 등
	귀가지원	귀가계획세우기, 귀가준비상담, 가족생활적응 상담 등

출처 : 여성가족부,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(2권), 295p

-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(청소년정책과)은 조례(「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) 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(원안 동의)을 제출하였음.

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 2) 청소년쉼터의 종류는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쉼터(24시간~7일 이내 일시보호), 단기쉼터(3개월 이내 단기보호), 중장기쉼터(3년 이내 중장기보호)로 구분함.

- 가정 밖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(금융 피해, 아동학대, 취업사기, 폭력 및 성범죄 피해 등)의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, 조례 개정 시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 매년 수립·시행하는 ‘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’ 등에 구체적인 법적 지원 및 행·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, 당연한 법적 난관 해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현재 시립청소년복지시설 중 일부(망우청소년단기쉼터, 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)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, 입법취지 상 요구되는 가정 밖 청소년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이는데, 조례 개정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〈 시립청소년복지시설 중 법적 지원 프로그램 〉

연번	시설명	보호 정원	주요 사업	주요 프로그램	사업비 (천원)
10	망우 단기	20 (여)	【4개 사업】 교육문화, 목적사업 상담지도사업, 기타사업	【45개 프로그램】 (교육문화) 바리스타, 신체활동, 여행, 학업지원, 자립지원 등 (목적사업) 의식주지원,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, 법률지원 (상담지도) 상담, 사후관리, 통합예술치료, 성교육 등 (기타사업) 홍보 및 아웃리치	284,445
12	신림 중장기	10명 (남)	【4개 사업】 교육문화, 목적사업 상담지도사업, 기타사업	【24개 프로그램】 (교육문화사업) 여행 문화 요리 음악 스포츠 멘토링 경제인문교육 등 (목적사업) 숙식제공, 활동비지급, 의료지원, 법률지원 등 (상담지도) 일자리, 학업, 자격증취득, 퇴소준비 지원 등 (시타사업) 지역사회연계, 홍보 등	79,154

출처 : 市 청소년정책과(2025.1.9.),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(쉼터, 자립지원관)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검토보고, 붙임4〔'25년 청소년복지시설 세부 사업계획(안)〕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김인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김태수, 남창진,
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
박철성, 서상열, 송도호,
신복자, 오금란, 왕정순,
유만희, 유정희, 윤영희,
이민옥, 이소라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정준호, 최민규, 한 신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재산 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에 금융피해 관련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절차 등 법적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항제9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청소년 기본법, 청소년복지 지원법,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</u>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(지원사업) 제1항제9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) 각종 자료 확인결과 이는 **기추진 사업**1)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평생교육국 2025 <위기청소년 특별지원> : 1,247,280천원(시비 623,640천원)

- 지원대상 : (만) 9~24세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청소년(비행,일탈 예방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, 은둔형 청소년)
※ 다만,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(국민기초생활보장 등)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
- 지원종류 및 내용 (※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 지원이 원칙)
 - 생활지원 :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월65만원 이하,
 - 건강지원 : 진찰, 약제, 처치, 수술, 입원, 간호 등 연 200만원 이하
 - 학업지원 :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, 김정고시 및 학원비 월30만원 이하
 - 자립지원 : 지식,기술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, 직업체험 비용 월 36만원 이하
 - 상담지원 :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월 30만원 이하 (※심리검사비 연40만원 별도)
 - 법률지원 : **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 연350만원 이하**
 - 활동지원 :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특기활동비, 체육활동비 월 30만원 이하
 - 기타지원 :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, 교복 및 체육복 지원, 수학여행비 등 지원

※ 자료 : 서울시 누리집(<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544840>)